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김 두 수* · 김 민 철**

차 례

- I. 서 언
- II.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분석
- III.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 IV. 결 언

【국문초록】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현상인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로 개칭되어 지위가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 제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녹색기술센터, 법학박사.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 언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성화 및 국제법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환경법도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¹⁾를 통해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설치되었다.²⁾ 이후 UN 총회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소위 Brundtland Report)에서

1) 산업 및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세계 각국들은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68년 제23차 UN 총회 결의 제2398호를 통해 UN차원의 환경회의 개최를 결의하였다. *Problems of the human environment*, A/RES/2398(XXIII), Plenary, A/PV.1733 03 Dec. 1968, without vote.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2398\(XXIII\)](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2398(XXIII)) (2019년 4월 3일 최종접속); 그리고 1972년 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2) UNEP의 의무와 목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수정사항, 1982년 나이로비 선언(Nairobi Declaration) 등에 근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1992년 5월 9일,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었고, 2009년에는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³⁾, 2011년에는 더반 선언(Durban Declaration)⁴⁾을 통한 국제적 논의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 가운데,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합의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⁵⁾을 채택하였다. 이 파리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UN에 제시하게 되었다.⁶⁾ 2018년 UNFCCC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
- 3) 코펜하겐 합의문에서는 “지구 기온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2010년 1월까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라는 내용이 합의되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의 최종승인을 받지 못해 留意(Take Note) 형식의 공식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 송동수,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85집, 2019, p.339.
- 4) 더반 선언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실효성 문제와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종료에 따른 대비를 논의하였다.
- 5)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12월 12일 채택된 후 2016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가입하였다; 파리협정 제2조 1항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 적응력의 강화 및 기후회복력의 증진, 그리고 온실가스 저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파리협정은 감축(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파리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를 신기후변화체제를 지탱하는 6개 의 기둥(pillars)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분야의 세부사항은 앞으로 전개될 후속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p.19; 박병도,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1호, 2017, p.38.
- 6)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환경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경제적인 법적 체계이다.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1.

이와 같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관련 감축 및 적응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법제도적으로 확립·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적절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감축과 적응에 관한 균형이 잡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유관법률과의 체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어 법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틀 내에서 별도로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체적인 법제를 마련하거나,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한 새로운 기본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⁷⁾ 이러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킴으로서 결국 모두가 원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이 2017년 7월 26일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본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안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안 제7조),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안 제28조)와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보고 의무 규정추가(안 제30조) 등을 통해 기존에 제기된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 2017년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 마련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감축 및 적응에 적합하게 수정·첨가·삭제되었으며, ‘기후변화대응법(안)’이 마련되어 기후변화 적응 등에 관한 대응 법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 도입되는 법령의 명칭은 기후변화법, 기후변화적응법, 기후변화대응법 등이 적절해 보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의 관련법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II.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분석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⁸⁾은 2017년 6월 8일 채택되어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동법이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동법에 관하여 설명한 후, ‘제2부(Part II)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전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개설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제1부’(Part I)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하와이주의 기본적 입장, 그 동안의 노력들과 본 법의 목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후변화에 대한 하와이주의 입법 활동

미국에서 기후변화 입법과 정책을 검토한 몇 안 되는 주로 유명한 하와이주는 복구, 보전, 온실가스 감축, 풍력 및 마이크로그리드 등 신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이에 하와이주의 입법부는 최근 10 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입법을 해왔다.⁹⁾

먼저, 입법부는 ‘법 234’(Act 234, Session Laws of Hawaii 2007)에서 “기후변화는 하와이의 경제복지, 공중보건, 천연자원 및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업지 및 거주지의 이동과 하와이의 담수 대수층 범람, 해양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손상, 가뭄과 토양수분상실의 장기화, 전염병 확산의 증가, 폭풍과 극심한

⁸⁾ Bill Text: HI SB559 | 2017 | Regular Session | Amended, Hawaii Senate Bill 559 (Prior Session Legislation), Bill Title: Relating To Climate Change. <https://legiscan.com/HI/text/SB559/2017> (2019년 4월 3일 최종접속); 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분석과 II 장의 내용은 전반적, 개괄적으로 김두수,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9, pp.50-59 인용·참조.

⁹⁾ 하와이주에서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다.

기상현상의 심각성이 증가했다”고 인정하였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임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기후변화 현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 ‘법 234’의 목적은 주 정부의 온실가스배출량 한도를 2020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배출량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하와이는 여전히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의회는 기후변화가 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 - ①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활동의 감소 및 ② 주 기후변화 영향 완화(경감)를 위한 적응(조치들) - 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¹⁰⁾

한편, ‘법 20’(Act 20, Special Session Laws of Hawaii 2009)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반(Task Force: TF) 창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TF에 대한 편당이 마련되지 않아 조직이 무산되었고 2011년 6월 30일부로 삭제되었다. TF가 무산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하와이 주지사과 주입법부는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창했고, 해안지대관리(Coastal Zone Management: CZM) Program¹¹⁾의 주무부처(lead agency)인 기획부(Office of Planning)가 이를 인지하여 하와이 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주도하였다.¹²⁾

그리고 ‘법 73’(Act 73, Session Laws of Hawaii 2010)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원’에 제공하기 위해 유류세로 알려진 환경대응, 에너지 및 식량안보 세금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법 286’(Act 286, Session Laws of Hawaii 2012)¹³⁾은

¹⁰⁾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2; 김두수, *supra* note 8, p.51.

¹¹⁾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와 해안 인접 주들 간의 자발적 협력체제로 주로 연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지역과 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¹²⁾ 김민철·김현민, 기후변화 관련 법적 동향 분석, 녹색기술센터, 2018, pp.18-19.

¹³⁾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와이 주민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배우고 인지하도록 할 것. 둘째, 지역사회의 관리당국/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 셋째, 하와이 기후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에 투자할 것. 넷째, 기후변화영향 대응정책의 기획 과정에서 하와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과 관행을 고려할 것. 다섯째, 자연자원의 보전과 복구를 촉구할 것. 여섯째, 관할권 경계를 넘나드는, 카운티, 주, 연방 기관 간의 협력과 민관협력을 장려할 것(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Planning Guide for State Coastal Managers. NOAA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2010. <http://coastalmanagement.noaa.gov/climate/adaptation.html>) (2019년 4월 3일 최종접속).

모든 카운티 및 주정부 활동이 ‘토지이용, 설비계량(증진) 및 프로그램 결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기후변화 적응 우선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하와이 주 계획법(Hawaii State Planning Act)을 개정하였다. 또한 입법부는 2013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닐 애버크롬비(Neil Abercrombie) 전 주지사를 지명하여 기후대응(준비) 및 복원력에 관한 대통령 태스크 포스(Task Force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를 구성하여 연방정부가 기후완화에 대한 주, 지방 및 부족의 노력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는지¹⁴⁾,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적응과 복원력; 구축된 체계(물, 수송, 에너지, 기반시설 및 해안기반시설); 천연자원 및 농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보건 등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와이 기후 적응 전략’(Hawaii Climate Adaptation Initiative Act, Act 83, Session Laws of Hawaii 2014)은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를 구성하고 토지·천연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및 기획부(Office of Planning)에 2017년 12월까지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나아가 이 ‘법 83’은 주정부의 경제, 건강, 환경 및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2050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주 전체 기후 적응 계획의 개발을 조율하도록 계획하였다.¹⁵⁾

(2)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2016년 9월 하와이 세계보전컨퍼런스(Hawaii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알로하플러스 도전 모델(Aloha+ Challenge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Motions)을 채택하였다.¹⁶⁾ 그리고 입법부는

¹⁴⁾ “Adapting to Climate Change”, State of Hawaii Office of Planning website. <http://planning.hawaii.gov/czm/initiatives/adapting-to-climate-change-2/> (2019년 4월 3일 최종접속).

¹⁵⁾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3; 김두수, *supra* note 8, p.52.

¹⁶⁾ “알로하플러스 도전 모델”은 2030년까지 6가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하와이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탄력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주 전체의 리더십 공약이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8026/> (2019년 4월 7일 최종접속).

2015년 12월 12일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 개국이 온실가스배출 저감, 적응 및 재정을 규정하여 2020년 출범하는 소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파리협정 하에 UNFCCC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투명성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를 기록 및 전달하며, 재정메커니즘을 통해 미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하와이주 입법부는 파리협정이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전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C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C 높은 온도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할 것, ②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을 증가시키고,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 복원력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시킬 것, ③ 금융흐름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복원력 발전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구할 것¹⁷⁾이 그것이다.

각 국가 상황에 비추어 이행되는 파리협정¹⁸⁾의 목적에 하와이 주의 입법부는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¹⁹⁾ 또한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하고 일주일 여 뒤에 발의되어 지난 2017년 6월에 제정된 하와이 법 32(Act 32 Session Laws of Hawaii, 2017)를 제정함으로써 하와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리협정이 규정하는 내용 일부를 법제화 한 주가 되었다. 하와이 주의 법에서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파리협정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기초와 별개로 하와이는 기후변화를 현실적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는 기후영향에

¹⁷⁾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5; 그런데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상규범상 국제사회에서 이 배출권의 상품이나 또는 금융상품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Deane, *supra* note 6, p.8.

¹⁸⁾ 파리협정은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이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이탈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5위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익준,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 2017, p.122.

¹⁹⁾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6.

적응하는 것이 하와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⁰⁾

(3)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의 목적 정립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은 위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입법활동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지하면서, 이 부(Part I)의 목적이 ① 온실가스배출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②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키고 ③ 파리협정의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주의 공약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한편, 하와이 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 전체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비상 사태 준비, 위험 예방 시설, 기후 위험 공동 출자 등의 부문에서 협동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²²⁾

(4)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대한 연방 내 하와이주의 입장

하와이주는 파리협정의 목적과 일반적인 기후변화정책의 원리를 따르며 특히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자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주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공원, 녹지 및 원시고원(native upland)·해안방재림(coastal forests)·습지(wetlands)의 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장기적 흡수원(long-term sinks)과 저장소(reservoirs)를 보전·향상시키는 조치²³⁾ 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제2부(Part II)에서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이 ‘하와이 기후변화

20) 김민철·김현민, *supra* note 12, p.18.

2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7

2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8

2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b).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전략'임을 적시하고,²⁴⁾ “위원회(Commission)는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를 의미한다.”고 함으로²⁵⁾ 기존의 ‘위원회’(committe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에 관한 정의는 폐지하였다. 이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일반적인 기능, 의무 및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는 오직 행정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천연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내에 설립·소재된다.²⁶⁾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coordination)은 토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명자와 기획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²⁷⁾ 동 위원회에는 ① 환경보호와 토지이용에 관한 주제의 관할권을 가진 입법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chai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②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는 토지·천연자원부장 또는 부장의 지명자, ③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는 기획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자, ④ 사업·경제개발·관광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자, ⑤ 하와이관광청 이사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지명자, ⑥ 농업위원회 의장 또는 의장의 지명자, ⑦ 하와이 내무부 최고행정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⑧ 하와이 주택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⑨ 운송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⑩ 보건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⑪ 부관(adjutant general) 또는 그의 지명자, ⑫ 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⑬ 각 카운티 기획부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⑭ 해안지대관리프로그램의 관리자²⁸⁾ 등의 구성원(members)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위원회 위원장은 동법 제5조 제(c)항에 열거된 구성원(members) 외에 추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일반대중, 군·주·연방 공무원 또는 기타 필요한 자’의 참여 또는 의견을 요청하여²⁹⁾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2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3; 김두수, *supra* note 8, p.53.

2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4.

2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a).

2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b).

2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c).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직무 역할³⁰⁾

동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로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실비의 필요 경비가 지급되며,³¹⁾ 위원회는 주 및 카운티의 기관, 연방 기관 및 기타 파트너 간의 적절한 정책 방향, 촉진, 조정 및 계획을 제공(제시)해야 한다.³²⁾ 또한 동 위원회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최신 과학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주 전역의 계획 및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모니터(감시) 및 예측’하며,³³⁾ ‘취약한 계층, 공동체, 산업,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³⁴⁾ 나아가 동 위원회는 연방, 주 및 지방 차원에서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파악하고 하와이의 주 완화 목표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작성·제시해야 하며, 하와이의 주민들과 하와이 환경에 대한 ‘미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한다.³⁵⁾

또한 동 위원회는 기존 자원의 능력과 가용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수입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영향·완화·적응의 경제적 및 예산적 파급 효과에 관해 주지사, 입법부 및 카운티에 조언하며,³⁶⁾ 기후변화

29)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d).

30) 김두수, *supra* note 8, p.55. 참조.

3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e).

3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f).

3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g).

3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h); 여기에서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영향 평가, 모니터링 및 예측 등은 소위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는 구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자 경제성, 기술성 외에 환경보전을 주요 인자로 하여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도입되었다.

3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i).

3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j).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수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 소집 20일 전에 주지사(governor) 및 입법부(주의회)에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³⁷⁾

그리고 동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업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계획, 정책 및 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유지해야 하며,³⁸⁾ 위원회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2023년 정기회합 소집 20일 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주지사, 입법부(주의회) 및 카운티에 보고서(a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³⁹⁾

동 위원회는 첫 번째 단계로서 ① 2050년까지 주와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 상승 영향의 주요 영역의 확인, ② 2050년까지 각 지역에 대한 최신과학연구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예견되는 영향의 확인, ③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확인, ④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용가능한 연방 법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확인, ⑤ 해수면 상승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한 계획, 관리 및 적응을 위한 권고 등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의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개된 후, 동 위원회는 5년마다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를 재평가⁴⁰⁾하고 갱신(업데이트)해야 한다.⁴¹⁾ 한편, 이 보고서를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① 대중의 의견과 관심을 유인하고, ② 진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 계획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여러 카운티, 주 및 연방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⁴²⁾

3. 예산 관련 규정

3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k).

3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l).

39)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m).

40)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제59조는 제36조에 의거한 기후변화위원회의 각 보고서가 제58조(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 명시된 목표, 제안 및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전(경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매 2년 마다 실시되는 이러한 이행점검은 영국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형식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계획하고 평가하여 향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충분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n).

4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o).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은 제3부(Part III)는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하와이 주 총수입 중 총 40,000달러 상당 금액이 2017-2018 회계연도에 배정되었으며, 2018-2019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금액 또는 상당액이 일반수입에서 충당된다.⁴³⁾ 이 금액은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천연자원부(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가 지출(사용)한다.⁴⁴⁾ 둘째, 하와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하와이 개정법 제76장(chapter 76, Hawaii Revised Statutes)을 면제받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급(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의 정규직 1 명(1.00 FTE)을 위하여, 하와이 주 총수입 중 2017-2018 회계연도에 필요한 65,000달러 상당의 금액과 2018-2019 회계연도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은 하와이 주 일반수입에서 충당된다.⁴⁵⁾ 이 금액은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천연자원부가 지출(사용)한다.⁴⁶⁾

Ⅲ.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안) 제정 동향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 동향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나라 국회에서 2017년 7월 26일 발의된 기후변화대응법안의 목적은 ① 경제·사회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②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③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⁴⁷⁾이다. 그리고 동법안은 기본 원칙 및 방향으로 ① 기본적으로 UNFCCC 및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②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성이 견지되도록 하며, ③ 사전예방의 원칙⁴⁸⁾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

4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I, Section 7, para.1.

4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I, Section 7, para.2.

4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I, Section 8, para.1; 김두수, *supra* note 8, p.56.

4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I, Section 8, para.2.

47)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조.

며,⁴⁹⁾ 또한 ④ 정부와 시·도지사는 국가단위 또는 관할지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조약 준수와 함께 국내 중장기계획 하의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⁵⁰⁾

둘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매커니즘(체제)과 관련하여, ①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⁵¹⁾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총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부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리고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⁵²⁾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에 소위 헌법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⁵³⁾ ③ 한편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⁵⁴⁾ 기후대응

48)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만약 어떠한 활동이 환경에 대한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당해 활동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연관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두수, EU 환경법, 한국학술정보, 2012, pp.177-178;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p.53;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pp.100-101;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Manchester Univ. Press, 1995, pp.208-209; Elli Louk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06, pp.50-51; Stuart Bell and Donald McGillivray,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 Press, 2006, pp.70-73.

49)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조.

50) 기후변화대응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51)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3조.

52)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8조.

53)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54) 기후변화대응법안 제28조.

을 위한 감축 외에 기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적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나아가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운용·관리하도록 하여,⁵⁵⁾ 기후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예산)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인 결과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구체적인 법안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후변화가 미치는 (악)영향·취약성·위험을 조사·평가하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⁵⁶⁾ 기후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와는 다른 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산업·인력의 발전 또는 양성, 국민의 기후변화대응 교육·실천의 증진,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⁵⁷⁾ 이는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능동적·선도적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 하에 실질적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미국 하와이주 기후변화법이 주는 시사점

(1) 기후변화 문제의 중대성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하여

가. 기후변화 문제의 중대성 인식

하와이주 입법부는 기후변화가 실제적인 현안 과제일 뿐 아니라 21세기에 반드시

55)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56) 기후변화대응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57)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인정하여 상원의 우선 과제 중 하나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와이주가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간과하거나 또는 당장은 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자 실제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⁸⁾ 그리고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 지속가능성, 안전 및 삶의 방식에 즉각적 및 장기적인 위협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하와이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당면 문제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태도는 하와이주가 보전, 온실가스배출 감축, 대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환경 분야 리더십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와이주 입법부는 지난 10 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여러

58) 김두수, *supra* note 8, p.56.

59) 기후변화의 진원지인 대기는 오존층, 생물다양성 등과 같이 국제공동체가 그 생존을 위해 연대하여 지켜야 하는 소위 ‘global commons’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가 되었다. 이재근, “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8, p.220;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동협정의 이행 및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수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원하는 것, 즉 ‘기후변화를 막자’는 열망을 명문화한 법적 문서로서 동협정의 비준수는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파리협정의 준수 메커니즘 설계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촉진적 접근과 집행적 접근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행준수 메커니즘에서 촉진과 집행 간의 균형 문제가 준수 메커니즘의 설계시 가장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촉진적 성격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으나 교토의정서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교훈삼아 비준수를 초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준수시의 법적 결과, 즉 집행적 기능의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는 후속협상에서 보완이 추가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박병도, *supra* note 5, pp.39,52-53 참조; 파리협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도 법적 구속력 여부에 관한 의견이 나눌 수 있으나, UNFCCC가 전형적인 구속력 있는 조약이지만, 본문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전지구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의 구속력은 없으며 단지 명목상의 규범적인 법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UNFCCC는 별도의 의무준수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명목상의 규범적인 목표를 강제할 구속력이 부재하고. 따라서 파리협정의 법적 성격만으로는 향후 국제기후체제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의 구체성과 의무준수체제의 여부와 연계될 때 법적 성격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시원,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p.295.

가지 법적 조치들을 통과시켜 왔다.⁶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법안은 법안의 제시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0일 발의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경제·사회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악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⁶¹⁾임을 적시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경제발전보다 진정한 ‘삶의 중시’ 기초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초로 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어지기까지는 기후변화대응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영향평가의 실시⁶²⁾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국제적 측면의 노력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점은 연방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하와이주 입법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 및 전세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파리협정의 목적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⁶³⁾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당면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이며 중대한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사안인 것이다. 물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와이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는 지구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구 환경문제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⁶⁰⁾ 김두수, *supra* note 8, p.56.

⁶¹⁾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조.

⁶²⁾ 기후변화대응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⁶³⁾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6; 국제사회에서도 파리협정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파리협정의 준수에 대한 관심은 교토의정서와 대비하여 드러나는 바,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협정이라는 큰 의의가 있으나, 많은 당사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고, 각국이 약속한 감축목표의 이행을 담보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미 Post-2020 기후체제는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참여국들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의무의 이행준수를 담보하는 의무준수체계가 해결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Robert O. Keohane and Kal Raustilala, *Toward a Post-Kyoto Climate Change Architecture: A Political Analysis*, UCLA School of Law,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08-14, 2008, pp.1-2.

문제가 우리나라 국내조치로서는 한계가 있고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나 협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와이주는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제1부(Part I)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온실가스배출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고 ②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증진시키고 ③ 파리협정의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주의 공약을 문서화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둘째, 주는 장기적인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을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공원, 녹지 및 원시고원(native upland)·해안방재림(coastal forests)·습지(wetlands)의 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장기적 흡수원(long-term sinks)과 저장소(reservoirs)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⁶⁵⁾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안도 하와이주 기후변화법과 유사하게 UNFCCC 및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노력하며 사전예방의 원칙 등 국제환경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⁶⁶⁾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매 5년 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간계획서를 수립·시행한다⁶⁷⁾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산업·인력의 발전 또는 양성, 국민의 기후변화대응 교육·실천의 증진,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⁶⁸⁾ 등 대내외적으로 능동적·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중대성 인식 및 국내외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경우 실질적인 결과 또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술되는 소관 위원회의 설치와 적절한 직무 수행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2)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과 관련하여

64)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1, para.7; 김두수, *supra* note 8, p.57.

6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 Section 2, (b).

66)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조.

67) 기후변화대응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68)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가. 위원회의 지위 강화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객관적·합리적 문제해결 시도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2부(Part II)는 기존의 ‘위원회’(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를 폐지하고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⁶⁹⁾ 소관 위원회를 Committee에서 Commission으로 비중을 두어 격상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동 위원회는 공적 측면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오직 행정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천연자원부 내에 설립·소재하며,⁷⁰⁾ 동 위원회의 조정(coordination)은 토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명자와 기획국장 또는 국장의 지명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⁷¹⁾ 동 위원회에게 위임된 일반적인 기능, 의무 및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⁷²⁾

그런데,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5조 제(c)항에 열거된 구성원 외에 추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일반대중, 군·주·연방 공무원 또는 기타 필요한 자’의 참여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⁷³⁾ 이는 동 위원회가 민·관 분야를 폭넓게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동 위원회 구성원의 확대가 동 위원회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보이는 바, 구성원의 보완이 의무사항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안상의 ‘기후변화위원회’⁷⁴⁾는 국무총리를

⁶⁹⁾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4;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는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제57조에 의하면 제56조에 따른 내무장관의 ‘국가 보고서 준비’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limate Change Act 2008(c.27), Part 4, Section 57 (1);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복원법 2014’(Resilient Rhode Island Act of 2014 - Climate Change Coordination Council)에 따라 기후변화조정협의회(협의체)(Climate Change Coordinating Council)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조정협의회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가 설치되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자문역할을 위하여 기후변화조정협의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science and technical advisory board)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⁷⁰⁾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a).

⁷¹⁾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b).

⁷²⁾ 김두수, *supra* note 8, p.57.

⁷³⁾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d).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총 2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공무원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부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하와이 기후변화법처럼 비공무원의 경우 그 대상이나 지위를 보다 폭넓게 적시·규명하여 보다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나. 중추적 전담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 부여⁷⁵⁾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제5조상의 동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주 및 카운티의 기관, 연방 기관 및 기타 파트너 간의 적절한 정책 방향, 촉진, 조정 및 계획을 제시하며,⁷⁶⁾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최신 과학 분석 및 위험 평가를 사용하여 주 전역의 계획 및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 주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모니터(감시) 및 예측’하며,⁷⁷⁾ ‘취약한 사람들, 공동체, 산업,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하며,⁷⁸⁾ 연방, 주 및 지방 차원에서 기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파악하고 하와이의 주 완화 목표를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를 작성해야 하며, 하와이 주민들과 하와이 환경에 대한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채택⁷⁹⁾하는 등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 파악, 예측, 정책 수립 및 점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추기관으로서 총괄적 또는 전체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대응법안이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바,⁸⁰⁾ 기후변화 관련 총괄적 책임을 지는 실제적인 책무수행 전담기관의 조속한 설치와 역할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기후변화대응법안에 법률의 목적과 기본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이 설치되고 관련 권한 및 기능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목적 달성의 관건이건데, 우리나라가 하와이주와 같이 꼼꼼하게

74)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3조.

75) 김두수, *supra* note 8, p.58. 참조.

7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f).

77)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g).

78)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h).

79)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i).

80) 기후변화대응법안 제13조.

소관 전담 기관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법안상에서는 환경부가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의 통제본부 역할을 하여야 하나, 기후변화 적응은 일개 부처나 몇몇 기관과의 협력으로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즉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농림수산업, 축산업, 교통, 통신 등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만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⁸¹⁾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등의 국민적 관심사와 지진, 해일 사건 등 자연재해의 이슈 등이 부각될 때 자연스럽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기획, 집행, 평가가 가능한 최고위급의 위원회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위원회는 기존 자원의 능력과 가용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수입원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영향·완화·적응의 경제적 및 예산적 파급 효과에 관해 주지사, 입법부 및 카운티에 조언하며,⁸²⁾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수행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 소집 20일 전에 주지사 및 입법부(주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⁸³⁾해야 하는 등 관련 비용 및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 위원회에 대한 조언의 기능, 즉 주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보고서 작성의 책무와 함께 운영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부여와 함께 기후변화대응법안 제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용·관리 등 운영상의 내실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법의 입법에 있어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⁸⁴⁾

81) 조성자, “미국 뉴욕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전략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8, p.361.

82)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j).

83)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k).

8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처음 기금을 출연한 이후 운용수익과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용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에너지사업기금을, 제주시는 신재생에너지기금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 운영의 역량과 환경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렇게 기후변화기금 재정 조달의 역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기금을 운용할 수

셋째,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업공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 계획, 정책 및 결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유지해야 하며,⁸⁵⁾ 위원회는 본 절에서 요구하는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2023년 정기회합 소집 20일 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주지사, 입법부(주의회) 및 카운티에 보고서(a report)를 제출⁸⁶⁾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등 후속 조치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법안도 법제도적 운영의 측면에서 사전활동계획, 이행결과평가 등에 있어서 투명성⁸⁷⁾ 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도 투명한 제도 구축과 운영은 결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책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사전활동계획이나 이행결과 평가 등의 모니터링 수단이 부족한 것이 적응정책의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하와이주가 기후적응 포털(Hawaii Climate Adaptation Portal)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기후변화,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 창구로 활용⁸⁸⁾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있도록 조례제정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지방 내지 지역기반 에너지/환경 공기업 등의 재원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다. 김현민·김민철, “기후변화적응 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 법제처, 2018, p.148.

85)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l).

86)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m).

87) 파리협정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언급할 것은, 준수 메커니즘과 투명성 체계는 역할상 구별된다는 점이다. 준수 메커니즘과 투명성 체계는 관련이 있으나 투명성 조항들이 준수 조항들로 대체될 수는 없다. 다만, 견실한 투명성 체계는 준수이행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준수 메커니즘은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 and Verification: MRV)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준수 메커니즘을 통한 효과적인 이행의 촉진은 정보의 생성 및 검토 또는 검증을 위한 협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이행 및 준수 상태의 평가에 필수적이다. 박병도, *supra* note 5, p.55; Sebastian Oberthür, “Options for a Compliance Mechanism in a 2015 Climate Agreement”, *Climate Law* 4, 2014, pp.32-33.

88) “Hawaii Climate Adaptation Portal”, Adaptation Clearinghouse, 2015. <http://www.adaptationclearinghouse.org/resources/hawaii-climate-adaptation-portal.html>. Last accessed on 10 August 2018. (2019년 4월 3일 최종접속).

넷째, 위원회는 첫 번째 단계로서 ① 2050년까지 주와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해수면 상승 영향의 주요 영역의 확인, ② 2050년까지 각 지역에 대한 최신과학연구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으로 예견되는 영향의 확인, ③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파급 효과의 확인, ④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용가능한 연방 법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확인, ⑤ 해수면 상승의 증가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한 계획, 관리 및 적응을 위한 권고 등의 사항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의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와이주의 지리적 특성상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발빠른 행보가 실제적으로 즉시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5년마다 ‘해수면 상승 취약성 및 적응 보고서’를 재평가하고 갱신(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⁸⁹⁾ 우리나라는 2010년에 부처 합동으로 최초의 국가대책인 「제1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11~’15)」을 수립·추진하여 기후 전망자료 마련, 농수산·건강·생태계·인프라 등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관리강화, 지자체 대책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정보를 부처별로 관리하고 부문별로 취약성평가를 하여 사안별로 각기 다른 대책이 난립하였다. 이에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16~’20)」에서는 기후리스크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통합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정보 통합을 이루고 있다. 하와이주가 5년마다 적응보고서를 재평가하고 갱신하듯이 우리나라도 제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더욱 사회문제가 되는 재난, 재해 분야나 안전사회 구축에 중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안정적인 집행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IV. 결 언

선진국과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며,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의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축에 이어 적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각국의 입법 동향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

⁸⁹⁾ Hawaii Senate Bill 559, Part II, Section 5, (n).

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을 마련하는 안⁹⁰⁾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는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다. 또한 법제상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확실히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문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9. 4. 9. 심사일 : 2019. 4. 15. 게재확정일 : 2019. 4. 24.

90) 기후변화적응과 관련하여 법제의 개선이나 강화가 시도되었던 입법안으로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2008년 8월 정부 입법예고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2008년 11월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안),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2014년 11월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안), 기후변화대응법안(2017년 7월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 문헌]

- 김두수, 『EU 환경법』, 한국학술정보, 2012.
-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환경과 통상』, 박영사, 2018.
- 김민철·김현민, 『기후변화 관련 법제 동향 분석』, 녹색기술센터, 2018.
- 김현민·김민철, “기후변화적응 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 법제처』, 2018.
- 박군성·함대성, 『환경법』, 박영사, 2006.
- 박병도,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국제법학 회논총』, 제62권 제1호, 2017.
- 박시원,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 송동수,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85집, 2019.
- 윤익준,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 2017.
- 이재곤, “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8.
- 조성자, “미국 뉴욕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전략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2018.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외국 문헌]

- Elli Louk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06.
-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Planning Guide for State Coastal Managers*.” NOAA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2010.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Manchester Univ. Press, 1995.

Problems of the human environment, A/RES/2398(XXIII), Plenary, A/PV.1733
03 Dec. 1968.

Robert O. Keohane and Kal Raustilala, *Toward a Post-Kyoto Climate Change Architecture: A Political Analysis*, UCLA School of Law,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08-14, 2008.

Sebastian Oberthür, “Options for a Compliance Mechanism in a 2015 Climate Agreement”, *Climate Law* 4, 2014.

Stuart Bell and Donald McGillivray,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 Press, 2006.

【Abstract】

**Analysis of Hawaii's Climate Change Act and
Implications for Korea's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Kim, Doos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Minchul

(Green Technology Center)

The importance of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and strengthened globally by the Paris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treaty. As we can be seen from the global climate phenomena,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a pressing iss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society can not avoid. In the meantime, Korea's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requires complementary legisl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this e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draft) is being prepared. As we have seen in this paper, the Hawaii climate change law provides useful suggestions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Kore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enhancement. Hawaii has expanded its strategy and mechanis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out the state to mee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adopted in the Par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was renamed the 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 to strengthen its position and to clarify its duties and power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the law and the budge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s in detail.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or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through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se various aspects. Above all, it should strengthen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observation the Paris Agreement,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atic annual plan and a long-term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a central author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ransparenc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ecto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objective and rational policies, as well a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n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limat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the GHG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Cente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vide a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 as to obtain the actual effects and result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inally,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nd pioneer the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fore it is delayed by raising awareness of adaptation and expansion of adaptation budget.

주 제 어 하와이주 기후변화법, 기후변화, 기후변화영향, 파리협정, 기후변화대응법안, 기후변화 위원회

Key Words Hawaii's Climate Change Act,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mpact,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Response Legislation, Climate Change Commission